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업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1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5

1. 개요 ····· 5

2. 개별 검토 ····· 15

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 이전의 적절성 ····· 15

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분야별 정책 기능 통합의 적절성 ····· 18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 3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

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

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수립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및 제9조).

라.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개정안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공급규정 신고, 열생산자의 공급 조건 조정, 공급시설 검사관리 등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법령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1]의 업무와 그 권한 일체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2]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①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이하 "전기가스열위원회"라 한다)는----------.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1)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조문만을 명시하였으며, 전체 조문대비표는 의안원문 참조

현 행	개 정 안
야 한다.	-.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총리령으로----------전기가스열위원회와----------. ----------.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현 행	개 정 안
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총리령으로----------전기가스열위원회에----------. ----------전기가스열위원회는----------총리령으로----------.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현 행	개 정 안
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총리령으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4. ----------. ----------

현 행	개 정 안
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기가스열위원회가----------. 가.·나. (현행과 같음) ③ ----------총리령으로----------.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④ ----------총리령으로-------.

현 행	개 정 안
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공급규정) ① ---------총리령으로----------전기가스열위원회에----------. ----------전기가스열위원회의----------.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가스열위원회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총리령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기가스열위원회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	제23조(검사 등) ① ----------총리령으로----------전기가스열위원회의----------. ------총리령으로----------총리령으로----------.

현 행	개 정 안
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총리령으로----------전기가스열위원회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리령으로----------전기가스열위원회에----------.

현행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요금 등 공급규정에 관한 신고, 열생산자의 공급 조건 조정 등 집단에너지 관련 행정업무의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임.

그런데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열) 등 에너지 요금은 물가 안정의 주요 요소로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에 개입하고 있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요금 결정,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최근에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하였음에도 전기요금은 이에 맞추어 인상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전력판매의 역마진구조가 형성[3]되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경영위기가 초래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4]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전반적인 업무 권한을 상대적으로 독립된 규제기관인 전기가스열

---

3) 일례로, 2022년 기준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약 67.3조원이었으나 구입전력비는 약 92.7조원 수준이었음

4)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음.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위원회로 이관하여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요금의 결정 과정에 대외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주요업무	주체	
	현행 법률	개정안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부장관	전기가스열 위원회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및 공급대상지역 지정		
열 생산시설 신설 및 사업허가		
요금 등 포함된 공급규정 신고 수리 및 관리		
열 수송관 등 공급시설 검사관리 업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리·감독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독임제 행정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② 기존에 별도로 수행하던 전기·가스·집단에너지(열) 등 각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나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이 발의되어 있고,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이 의결되어야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적 검토

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 이전의 적절성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대표되는 독임제 행정청과 행정위원회로 대표되는 합의제 행정청으로 구분되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1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청과 달리 합의제 행정청은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다수의 위원이 합의를 도출하여 의사결정을 내림.

합의제 행정청은 독임제 행정청에 비해 정책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금융 분야나 분쟁·조정 분야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독임제 행정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집단에너지(열에너지) 관련 정책 사항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제10조의3[5]에 따라 설

---

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제10조의3(전기가스열위원회) ①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등(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둔다.**
1.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전기사업등의 구조개편 및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감독
2. **에너지시장**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3.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치되는 합의제 행정청인 전기가스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집단에너지 관련 정책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리·감독 등 열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기가스열위원회[6]가 관장하게 된다면,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독립적인 다수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결정구조를 통해 현행의 독임제와 비교하여 에너지 가격 결정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전기사업등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5. 전기사업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591호)

제10조의6(전기가스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민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전기・가스・열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기능 등 시장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기능은 합의제 기관보다 독임제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으로, 전기·가스·열 등에 대한 통합 규제 거버넌스로의 개편은 에너지원별 특성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분야별 정책 기능 통합의 적절성

개정안은 전기·가스·집단에너지(열)와 관련된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하면서 에너지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전기가스열위원회에 관련 권한을 통합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전기・가스・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시장에 대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 가스 및 집단에너지(열)는 에너지 자체의 특성과 판매 구조가 상이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전기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7]되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데에는 전력망이라는 물리적 제약[8]이 있으며, 전국의 전력망(계통)이 하나로 연결된 특징으로 인해 한전이 전력 소매시장에서 판매자 지위를 독점하고 있음.

반면,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여러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면 개별 소매기업이 서로 다른 요금체계 아래에서 일반 소비자

7) 2022년 기준, 전체 전력판매량(5,479억 3,300만kWh) 중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4.0%(2,960억 3,600만kWh)임.

8) 현재 송전망 건설 지연과 발전설비 출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나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주요 전력수요 지역에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거주시설의 난방이나 발전 원료로 주로 사용됨.

또한, 집단에너지(열)는 주로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이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시장이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수송관을 통해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활동임.

이렇듯 에너지원에 따라 시장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리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열) 규제기관을 하나로 통일하면 에너지 정책의 통일성·일관성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나 에너지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요금 결정과 시장 규제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기와 달리 가스나 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조직을 법률로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있는[9] 등 에너지원별로 정부 개입 수준이 다르고 요금 결정 체계도 상이하여 전기·가스·집단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단일 규제기관에서 다루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지침에 근거해 가스 도매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집단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사업허가 관련 사항을 다루는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함.

문 의 처
02)6788-5533